

2002. 11. 11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0.25	10.28	11. 8	11. 8	문화관광과장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문화회관관리소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안보 온천장이 개장됨에 따라 온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수 및 임기를 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시기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 회의시 출석위원의 실비변상 규정(안 제9조)

나.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불용물품의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관리물품을 타기관에 소요조회후 불용결정 하던 것을 불용결정후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문화회관을 이용토록 하므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문화회관사용료 감면대상확대(안 제10조)
 -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 : (당초)50%감면 ⇒ (변경)100%감면
 -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50%감면(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는 2002. 8. 10일 조례 제578호로 제정되었으며 온천장 개장을 위해 8. 12일 민간위탁자로 사단법인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로 방침을 결정하고 8. 19일 운영위원회를 구성 9. 30일 수안보온천장운영관리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 12일 개장하였으나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조례에는 “수안보온천장”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수안보 하이스파”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거 마련을 위해 “제2조(위치) 온천장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를 “제2조(위치 및 명칭) 온천장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두며 명칭은 수안보 하이스파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 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규정된 것을 먼저 불용 결정을 한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타기관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므로서 법의 취지를 알리고 불용품 활용도를 높이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릴 것으로 사료되며
-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문서로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 순수 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사유중 일부는 문화회관 사용료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확대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질의 : 위원회 10명의 구성 비율은?

- 답변 : 공무원은 부시장 등 4명, 시의회의원 2명, 학식및경험겸비자 4명

▶질의 : 공무원 위촉시 국장들도 조례에 명시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은?

- 답변 : 포함되도록 하겠음

나.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없음”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 사용료징수조례중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 답변 :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질의 : 반액 감면의 경우 대학교를 제외시킨 사유는?

- 답변 : 대학 자체내 공연장 활용으로 제외 하였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의결(별지)
- 나.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명칭및위치) ①온천장의 명칭은 “수안보하이스파” 라 칭한다.
②온천장 및 사무실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위원은 온천장 소재지 시의원,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 위원은 온천 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위치) 온천장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공무원 2.온천관련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명칭및위치)①온천장의 명칭은 “수안보하이스파” 라 칭한다 ②온천장 및 사무실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④위원은 온천장 소재지 시의원,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 과장, 지역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 위원은 온천 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6조 내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온천장 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온천관련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온천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수탁협약사항 심의

2. 위탁운영시 사업계획 심의

3. 기타 온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당해 의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